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를 추가 규정하고, 별표 4 서식의 설계 기준에서 서식 명칭을 굵은 글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업무인계·인수서)에서 일본식 용어인 “입회자”을 “참관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0.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를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예시) ○○군수 권한대행 ○○○

(또는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

부 군 수

별표 4 제8호다목 중 “주요 사항과 서식 명칭”을 “주요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하고, 같은 서식 비고란의 제1호 중 “참관인은”을 “참관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u> <u>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u> <u>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로</u> <u>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u> <u>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u> <u>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u> <u>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u> ○○군수 권한대행 ○○○ (예시) (또는 직무대리) 부 군 수	<u>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u> <u>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u> <u>대행 또는 대리하는 사람이 발</u> <u>신 명의로 함께 본인의 성명을</u> <u>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u> <u>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u> <u>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u> <u>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u> (예시) ○○군수 권한대행 ○○○ (또는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 부 군 수